

# 2013도63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00저축은행 사건) 판결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피고인 A(00저축은행 회장), B(부회장) 등은 2011년 2월경 00저축은행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2011년 5월경 구속기소되었음. 주요 기소내용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동산 사업시행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임. 최초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음.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A, B에 대해서 종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3. 9. 26.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394 판결).

### I. 사안의 내용과 쟁점

#### ■ 사안의 내용

- 피고인들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경(사기), 부동산 사업시행 관련 SPC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배임)(캠보디아 개발사업 포함), 예금인출 관련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기타 범행(뇌물 공여, 비자금 횡령, 위법 배당 등)으로 기소되었음
- 최초 2심(서울고등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계 징역 12년,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경(배임) 부분 중 재산상 손해액을 잘못 계산한 부분과 실패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환송 후 2심(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종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구체적인 양형이유로서 00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1조 2,20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예금주들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 점, 피고인 A가 00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음

#### ▣ 쟁점(피고인들의 상고이유)

- 피고인들은 00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이 이 사건 SPC에 대출을 해 준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00저축은행그룹의 자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PF대출 및 담보다아 사업 관련 대출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00저축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영업정지 전 특정고객에게 연락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였음
- 아울러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특히 피고인 A는 실질적인 주범은 피고인 B이므로 자신의 형이 더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인 B은 배임액수가 최초 2심 판결 당시보다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2심이 종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음

## II. 대법원의 판단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송 후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 유무죄 여부에 대한 주장 관련 : 환송 후 2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것임

- **양형부당 주장 관련**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피고인 A, B의 관계 및 이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에 관한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